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1 호
----------	--------

제출년월일 : 1998년 11월 20일

제출자 : 예산군수

□ 개정이유

-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의 공장건설 촉진으로 외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매각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안 제10조)
-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부, 매각 허용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 영구시설물 설치금지에 대한 조항 삭제(현행 조례 제20조)
- 공유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규정 보완(안 제22조)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조정 및 신설(안 제23조)
- 공장건설 목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 신설 (안 제23조의3)
-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조정 및 신설(안 제25조)
- 대부료의 납기와 연체문제를 해소하도록 개정(안 제26조, 제28조)
- 수의계약 매각범위면적 등 규정 신설(안 제39조제1항, 제2항, 제3항)

-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대금 감면규정 신설(안 제39조의3)
- 관사정비계획에 따라 관사의 구분을 조정하고 사용료의 면제규정을 개정
(안 제51조, 제57조)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 및 기타 자구정리

참 고 사 항

-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98. 7. 11 개정)
- 조례(규칙)개정표준안 통보[도회계 13330-1202('98. 8. 26)호]

예산군조례 제 1 호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 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 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 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 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 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 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하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도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제2항 중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제6항을 “주거 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끝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 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고, 제7항을 삭제하며,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 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이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제4항 중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사용하는 총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균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 중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동지 또는 개별 공장 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 내의 재산

5.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49조제1항 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50조 중 “실·과장 등”을 “시설관리사 등”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군수 관사
2. 2급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산업입지개발이 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p> <p>3. 공업배치및공간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p> <p>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p> <p>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p> <p>6. 기타 자치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p>
<p>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분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9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p>제20조(삭제)</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전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현 행	개 정 안
<p>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 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p> <p>4. 영 제9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5.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고가 발생한 경우</p> <p>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 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 일을 연장하는 경우</p> <p>7.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p>	<p>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p> <p>4. 군수가 경영수의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 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2.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현 행	개 정 안
<p>공장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풍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p>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 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 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기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준 투자법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p>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현 행	개 정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중설하는 사업</p> <p>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p> <p>제24조(토석 채취료 등)</p> <p>①~③(생략)</p> <p>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사, 사정 절통단체·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 시가조사,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생략)</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 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중설하는 사업</p> <p>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p> <p>제24조(토석 채취료 등)</p> <p>①~③(현행과 같음)</p> <p>④-----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p> <p>⑤(현행과 같음)</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 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p>

현 행	개 정 안
<p>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2. ~3. (생략) (신설)</p>	<p>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2. ~3. (현행과 같음)</p> <p>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p>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 _____ 으로 사용하는 면적 총면적 _____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p>
<p>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군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p>

현 행	개 정 안
<p>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 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의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p>	<p>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p> <p>②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p> <p>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 (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p> <p>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p> <p>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④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현 행	개 정 안
<p>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법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떨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환한다.</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떨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법위내에서 매</p>

현 행	개 정 안
<p>(소 설)</p>	<p>각할 수 있다.</p> <p>제39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 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p>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

현 행	개 정 안
	<p><u>지역내의 재산</u></p> <p>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부대시설내의 재산</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p> <p>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 내의 재산</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p> <p>5.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p> <p>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p>

현 행	개 정 안
	<p><u>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u></p> <p><u>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u></p> <p><u>3.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u></p> <p><u>4. 전체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u></p>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 - - - - - - - - - - - - - 농업기술센터 - - - - - - - - -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함은 군수, 부군수, 실·과장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유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정의) - - - - - - - - - - 시설관리사 등 - - - - - - - - - - - - - -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관사 : 군수 관사 2. 2급관사 : 부군수, 실·과장 관사 3. 3급관사 : 1급 내지 2급이외의 관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관사 : 군수 관사 2. 2급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등
제5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을	<p>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p>사용한 날을 기준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